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1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허영 · 김남근 · 이해식
서삼석 · 박균택 · 김영환
홍기원 · 박상혁 · 진성준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
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의 2배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u>금액</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u>5억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 ----- ----- ----- <u>금액의 2배</u> <u>를</u> ----- -----. ----- ----- <u>50억원</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